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1월 11일, 김선교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1월 1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9회 국회(임사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1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27.)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 상정, 소위심사
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선교 의원)

현행법은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항만시설의 신설·개축·보강·유지

· 보수 및 준설(이하 “항만개발사업”이라 함)을 하려는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관리청은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되, 항만시설 유지·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미 준공이 완료된 항만시설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준설이 항만시설 유지·보수에 해당하는지 명시적인 규정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허가통지 기간 또한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만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준설이 항로·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련 규정에 대한 법률 해석 및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단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성완)

□ 현행법은 항만개발사업은 관리청이 시행하도록 하되,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항만시설의 신설·개축·보강·유지·보수 및 준설(이하 ‘항만개발사업’이라 함)¹⁾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관리청은 허가요건을 확인 후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1) 「항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항만개발사업”이란 항만시설(항만구역 밖에 설치하려는 제5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장래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시설로 지정·고시할 예정인 시설을 포함한다)의 신설·개축·보강·유지·보수(補修) 및 준설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되, 항만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²⁾

□ 그런데 현행법에는 항만시설의 유지·보수에 이미 준공이 완료된 항로·정박지 등의 유지를 위한 준설³⁾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이에 대한 허가통지 기간이 항만개발사업의 신설·개축 시 적용되는 20일인지, 유지·보수에 적용되는 14일인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참고로, 법제처에서는 준공된 항만시설인 항로·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이 항만시설의 유지·보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법령정비를 권고('24. 10. 4.)한 바 있음.

□ 이에 개정안은 항만시설의 유지·보수에 항로·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이 포함된다고 명확히 규정하여 항만개발사업의 허가 통지기한의 적용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고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2) 「항만법」 제9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① 항만개발사업은 관리청이 시행한다.

②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개발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6. (생략)

④ 관리청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본문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는 허가받은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준설(浚渫) : 물밑의 토사, 암석을 굴착하는 작업. 준설에는 항만개발과 선박의 대형화에 따라 수심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개발 준설과, 기존 항로 혹은 박지에 퇴적된 토사에 대해 선박의 항행 수심 유지를 위해 시행하는 유지준설이 있음. 항만구조물의 기초공사를 위한 터파기 등 수중에서의 굴착도 준설의 일종이지만 통상 수중굴착이라고 함.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정보관 용어사전)

- 항로·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은 준공된 이후의 항로·정박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항만시설의 신설·개축보다는 유지·보수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짐.

□ 개정안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준공된 항로·정박지에 대한 준설이 항만시설의 유지·보수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하여 항만개발사업의 허가기간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개정규정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조경태)

항만시설의 유지·보수에 항로·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도 포함되도록 규정하여 항만개발사업 허가기간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이 법 시행 당시 유지 준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는 개정규정을 따르도록 적용례를 마련하여 수정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수정안의 요지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 및 체계를 고려하여 자구를 수정함.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부대의견

없음

10. 소수의견 요지

없음

11.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붙임] 1. 향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향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2. .

제 안 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정이유

개정 규정은 시행을 위해 별도의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하도록 하고, 개정 규정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유지 준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는 개정규정을 따르도록 적용례를 마련함.

수정주요내용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하며, 개정 규정 시행 당시 항만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9조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르도록 적용례 마련(안 부칙).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본문을 삭제하고, 제1조 및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만개발사업 허가 여부 통지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제9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9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수정안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칙	부칙
<u>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	<u>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u>제2조(항만개발사업 허가 여부 통지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제9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9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다.</u>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단서 중 “보수”를 “보수(항로·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만개발사업 허가 여부 통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9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고 통지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제9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리청은 제2항 본문에 따 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 ----- ----- ----- -----보수(항로· 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 설을 포함한다)----- ----- -----.
⑤ ~ ⑩ (생 략)	⑤ ~ ⑩ (현행과 같음)